광명시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21. 12. 23 조례 제2813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위한 공영 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공영장례"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광명 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장례를 말한다.
 - 2. "연고자"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영장례 운영에 필 요한 행정적·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·단체 등과 협 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대상)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「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
 - 나.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
 - 다.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 · 기피하는 경우
 - 2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
- 제5조(운영내용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공영장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- 1. 수의, 관, 유골함 등 장례용품

광명시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조례

- 2. 장의차량 · 장례식장·화장시설 사용료
- 3.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
-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공영장례 시 매장(埋葬)은 하지 않는다.
- ③ 공영 장례 소요비용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,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.
- 제6조(업무위탁 및 대행) 시장은 공영장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